#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용 가상계좌 발급에 관한 설명자료 (주)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2021-11-04

####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7일 (수요일)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와 미팅을 위하여 귀한 시간 내주시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 답변서는 10월 27일에 있었던 회의간 광주은행에서 당사가 추진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에 관하여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경쟁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외비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법규 검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등록하고,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자가 전자거래(B2B, C2B)에서 발생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 대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타법령에서 허용되는 거래인지?

#### 1-1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 취급가능 여부 검토

전자지급결재대행업무 등록자 +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자 → 외국환업무 취급가능

<근거 법령>

- (1)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①항 2호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은 외국환업무에 해당
- (2) 외국환거래법 제8조 ③항 "금융회사가 아닌 자\* 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
- (3)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 ⑤(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 자지급결재대행에 관한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GME는 (2)에서 말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함.
  - \*\*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정함

#### 1-2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의 업무취급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추심 및 수령 <근거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전자금융거 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 1-3 해당 거래에 대한 신고 여부 등 :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자는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신고 불요

<근거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5-2조(신고의 예외) 법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2.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0-21호, 2020.8.4. 개정>

#### 1-4 외국환은행의 의무 :

#### (1) 지급등의 절차

- ① 외국환은행이 이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 받은 경우, 규정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함
- ②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야 함

#### (2) 근거 법령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지급 및 수령)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 정>

- ②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적용범위 등) ① 법 제15조, 제25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 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③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 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1-5 보고 의무

- (1)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2항에서 영 제15조의 5에 따라 기타전 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아래 정보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 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정산 관련 거래내역 등.
- → BOK 외전망 매일 보고/ 금융감독원앞 분기보 및 반기보 제출

# 2. GME에서 제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PG) 모델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어디인지?

#### 2-1 PG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 (1) C2B ㈜페이게이트, ㈜이나인페이, ㈜케이에스넷 등
- (2) B2B ㈜한패스, ㈜센트비, ㈜와이어바알리 등

#### 2-2 C2B 모델에 대한 가상계좌 공급 은행

- (1) 현재 당사에서 제시한 C2B모델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페이게이트이며 해당 업체에 가 상계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KEB하나은행
  - ② IBK기업은행
  - ③ NH농협중앙회
  - ④ SC제일은행
  - ⑤ 신한은행

<근거자료>

- <a href="https://km.paygate.net/pages/viewpage.action?pageId=15434179">https://km.paygate.net/pages/viewpage.action?pageId=15434179</a> (결제용 일반 가상계좌를 할당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은행 목록)
- https://www.paygate.net/front/payment\_service (서비스 종류 가상계좌)
- (2) 그밖에 ㈜페이게이트는 Flywire를 통하여 개인 또는 유학 컨설팅 회사를 위한 '유학자금 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s://cutt.ly/3RBm3I1 (Flywire 유학자금 가상계좌 송금 안내)

#### 2-3 B2B 모델에 대한 가상계좌 공급은행

㈜한패스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가상계좌는 Innopay-㈜인피니소프트를 통해 재판매된 KB국민은행 가상계좌이며 집금된 대금은 최종적으로 KJ광주은행을 통하여 정산이 되고 있는것으로 판악됩니다.

#### <근거자료>

#### 일반정보 상호명 한패스(주) MID pghanpas3m 대표자명 김경훈 0215220767 yu3ch@hanpass.com 사업자번호 7148700610 대표TEL 대표이메일 업 종 외환이체 업 태 과세여부 홈페이지URL https://www.hanpass.com/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924층(성수동2가, 광명타워) 사업장주소 가맹점계약서 다운로드 계약서 입금정보

은 행

광주은행

예금주

한패스(주)(결제사

신용카드

계좌번호

1107\*\*\*\*\*54

입금계좌

입금주기

결제정보(수수	로)					
서비스	결제방법	PG사	시작일	종료일	인증방식	사용여부
	상담원 수기결제					미사용
	SMS 인증결제					미사용
	SMS 수기결제					미사용
	ARS 안심결제					미사용
결제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 인증결제					미사용
2-11-1-1-	신용카드 자동결제					미사용
	가상계좌	이노페이PG	2021/01/19	9999/12/31	N/A	사용
	계좌이체					미사용
	통합간편결제					미사용

Innopay내 ㈜한패스 정보화면

#### 2-4 타사의 진행 방식과 비교표

프로세스	Paygate (C2B)	GME (C2B)
1)	고객이 해외 Marketplace 에 가입	좌동
2)	실명확인	좌동
3)	은행정보 확인	좌동
4)	전화번호 확인	좌동
5)	가상계좌 발급	좌동
6)	정해진 원계좌에서만 입금	좌동
7)	정해진 금액만 입금	좌동
8)	정해긴 기간 내에만 입금	좌동

<sup>\*</sup>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별첨자료 1. 참고

프로세스	한패스 (B2B)	GME (B2B)	
1)	입급자 정보를 파트너사로 미리 받음	좌동	
2)	업체별, Marketplace 별 구분 배정	좌동	
3)	입금자 정보, 금액이 배정된 업체, 받아야 할 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좌동	
4)	3) 에 이상이 없을 시 — 입금성공	좌동	
5)	3) 과 불일치 시- Hold	좌동	
6)	필리핀 메트로은행에 거래명세서 제공하여 해외은행에 송금	광주은행 이용예정	
7)	해외은행을 통하여 파트너사에 정산 좌동		

<sup>\*</sup>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별첨자료 1. 참고

#### 3. GME에서 제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PG) 모델의 사업성 및 타사와의 비교

#### 3-1 원화로 수취하는 거래의 사업성

국내에서 집금한 전자지급결제대행 대금은 원화수취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GME는 외국 파트 너사 (예. Pingpong)에 실시간 환율 정보를 API방식을 통하여 공유하고 있음. 외국 파트너사(Pingpong)에 서는 GME 환전 API에서 나온 값에 파트너사 마진을 추가하여 구매자들에게 원화로 표기하여 판매.

환율이 실시간으로 상품가격에 반영이 되고 일정 스프레드가 가산되어 정산되므로 국내 PG업체(GME)는 수수료와 일정 환전마진을 취할 수 있고 해외 PG사인경우, 전 세계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많은 외화 거래를 하고 있기에 환율변동 리스크 헷지가 용이하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델임.

#### 3-2 C2B 사업 국내 수요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서는 가상계좌이체 방식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선호합니다.

- (1) 카드결제 대비 저렴한 수수료
- (2) 가상계좌의 경우 판매자의 해외 계좌에 약 2영업일 이내(약정에 따라 상이함) 이체가 완료됨. 카드의 경우 정산기간이 길어 (최장 65일 소요) 가상계좌 방식이 많이 이용됨.

#### 4. GME와 구매자(Buyer), Marketplace 간 계약관계에 대한 설명

#### 4-1 GME와 구매자 (Buyer), Marketplace의 계약관계

구매자 (Buyer)와 Marketplace 모두 GME 이용약관을 동의 하여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C2B의 구매자(Buyer)는 Marketplace에서 구매과정에서 대금결제 요청시 당사 이용약관에 동의 하도록 할 예정

(https://docs.paymentwall.com/payment-method/virtual-account-kr) Step 3 참고



(예시-결제 요청시 약관에 동의 하는 장면)

● B2B의 Marketplace (예. 구글코리아)는 해외 파트너사(Pingpong)가 판매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를 Marketplace에 전달하기전 당사 이용약관에 동의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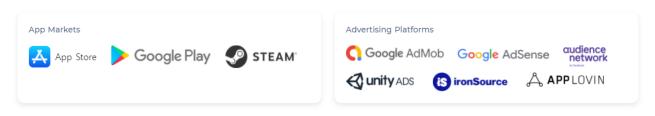
별첨자료 1 -C2B, B2B 사업흐름도에서 상세 설명

## 4-2 Pingpong과 예시로들은 15개 Marketplace와의 관계

실제 Pingpong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Marketplace들로서 향후 Pingpong과 계약 체결 시 GME를 통해 대금지급할예정

Expand your business opportunities across the globe

Get money to your local bank account from any of these platforms



Any questions regarding these platforms on payment, account registration, tax and multi-account management, feel free to contact us at <a href="mailto:developers@pingpongx.com">developers@pingpongx.com</a>

#### 5. 광주은행에서 거래의 시작과 끝의 추적이 가능한지?

거래번호, 거래일시, 가격, 수량, 상품명등의 정보를 이용한 추적 가능 별첨자료 1 -C2B, B2B 사업흐름도에서 상세 설명

### 6. Pingpong Global Holdings Ltd. 에 관한 추가정보

업체명	핑퐁		
	Pingpong Global Holdings Limited		
창업	2015년 미국 뉴욕		
직원	약 600여명		
업종	결제 대행업 (PG)		
주요 사업소	미국, 중국, 홍콩, 룩셈부르크, 인도, 베트남, 일본, 한국		
주요 제휴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 아마존, 위시, C디스카운트, 라쿠텐, 쇼피 등		
이용자 수	전세계 약 100만명		
연간 결제대금 처리액	약 1,000억 달러 (약 112조원) (2020년 기준)		
홈페이지	한국어- https://kr.pingpongx.com/		
	영어 - https://usa.pingpongx.com/		

별첨자료 2 - '2020\_핑퐁글로벌\_회사소개서.pdf'에서 상세 설명